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02
----------	------

2020년 9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7월 28일 김소영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 2020년 8월 10일
3. 상정일자 : 제296회 폐회중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09월 0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소영 의원)

#### 1. 제안이유

- 코로나 감염병사태가 발생하면서 해외 입국자 등 불가피하게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자가격리자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며, 건강유지를 위하여 감염병에

관한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이에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및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정보제공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건강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정보제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제7호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없음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코로나 감염병 사태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의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감염이 의심되는 접촉자 등에 대해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가격리시 일생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특히,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관련된 감염병 정보 등을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으로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 2 주요 내용별 검토

#####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제25조 ‘자가격리 장애인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25조의2(자가격리 장애인 지원)</u></p> <p>① <u>시장은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 또는 감염병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p>

- 현행안 제25조에서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 미등원시 보육 돌봄 지원, 감염병 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감염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등에서 격리되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 및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바, 장애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돌봄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화 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나.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시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접촉자<sup>1)</sup>에 대한 자가격리 통보를 실시하게 됨.
-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가격리대상자에 대해 외출을 금지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등의 7가지의 생활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1일 1회 이상 연락하여 증상을 확인하는 등 관리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①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금지 ②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진료 등 외출이 불가치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④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⑤ 개인물품(개인용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⑥ 건강수칙 지키기 ⑦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 또한, 감염병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339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전화) 상담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카카오톡 문자(채팅) 상담 등으로 장애인

---

1)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하며, 이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자가격리자에 포함되는 경우 활동지원 급여를 확대 지원하고 있음.

[코로나19 장애인활동지원 대응지침]

- ▶ 이용자가 자가격리자에 포함되어 자택격리 된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급여 확대
- ▶ 보호자가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에 포함된 경우 ‘보호자 일시부재(수급자)’ 또는 ‘긴급 활동지원(비수급자)’ 제공대상으로 지원 확대(월 한도액: 1,620천원, 월 120시간)

### 3 집행부 의견

- (질병관리과) 서울시 감염병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대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자가 격리 시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 조례 개정에 동의함.
- (장애인자립지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므로,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지속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함.

※ 2020년 정부의 「코로나19 장애인활동지원 대응 지침」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장애인이 자가격리 된 경우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 중임(서울시 3명 8,487천원 지급, ~20.8월 신청 기준)

#### 4 종합의견

- 현행 조례에서는 감염병의 지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자등에 대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해 생필품 및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가격리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가격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실효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02
----------	------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28일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경우, 김소양, 황규복  
김인호, 박기재, 오한아, 이정인  
이호대, 장상기, 전석기, 채유미  
최기찬 의원 (13명)

## 1. 제안 이유

- 코로나 감염병사태가 발생하면서 해외 입국자 등 불가피하게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자가격리자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며, 건강유지를 위하여 감염병에 관한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이에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및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정보제공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건강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정보제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제7호의2).

### 3. 참고 사항

- 가. 관계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자가격리 장애인 지원) ① 시장은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 또는 감염병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u>제25조의2(자가격리 장애인 지원)</u> ① 시장은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 또는 감염병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